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7 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송갑석·이정문·이용빈

윤영덕 · 정춘숙 · 이성만

최인호 • 전용기 • 민형배

박범계 · 김경만 · 임종성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춘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맺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수 있음.

그러나, 현행 법령에 따르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되지만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"중소기업협동조합"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부설 연구기관 등도 기업부설연구

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그런데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과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대 상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 를 신설함으로써, 개별 중소기업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 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제1항).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1항 중 "연구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가 연구"로, "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"을 "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2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
- 3. 본사의 소재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만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 발부서를 국외에 두고 있는 기업
- 4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
- 5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
- 6. 그 밖에 본사의 소재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기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4조의2(기업부설연구소 또는 | 제14조의2(기업부설연구소 또는 |
|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) |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) |
|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| ① |
|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 | |
| 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 | |
| 여 <u>연구</u> 인력 및 시설 등 대통 | 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</u> |
|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| 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부설 |
| 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|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가 |
|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 | <u>연구</u> |
| 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 | |
| 서로 인정할 수 있다. | - <u>경우에는</u> |
| | |
| | |
| <u><신 설></u> |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|
| | 따른 중소기업 |
| <u><신 설></u> | 2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 |
| | 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|
| | <u>조합</u> |
| <u><신 설></u> | 3. 본사의 소재지를 국내에 두 |
| | 고 있지만 부설 연구기관 또 |
| | 는 연구개발부서를 국외에 두 |
| | 고 있는 기업 |
| <u><신 설></u> | 4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|

| | 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벤처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<u>기업</u> |
| <u><신 설></u> | 5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|
| | 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|
| |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|
| <u><신 설></u> | 6. 그 밖에 본사의 소재지를 국 |
| | 내에 두고 있는 기업 |
| ② ~ ④ (생 략)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